

[변경 대비 표]

■ 변경 집합투자기구 및 변경 서류

펀드명	BNK삼성전자중소형증권투자신탁1호(주식)
변경서류	집합투자규약
변경사유	직판 클래스 신설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효력발생일	2022년 03월 18일

■ 변경대비표

항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직판클래스 신설	① ~ ② (생략)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14. (생략) 15. ~ 17. <신설>	① ~ ② (현행과 동일)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14. (현행과 동일) 15. Class J-e 수익증권: 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수익증권 16. Class J-Pe 수익증권: 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 17. Class J-P2e 수익증권: 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
제9조 (수익권의 분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 ② (생략)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한다. ② (현행과 동일)
제10조	직판클래스 신설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

<p>(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p>	<p>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p>	<p>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u>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u>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u>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u></p> <p>1. ~ 14. (생략) 15. ~ 17. <신설></p> <p>② ~ ④ (생략)</p>	<p>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u>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u>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u>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u></p> <p>1. ~ 14. (현행과 동일) 15. Class J-e 수익증권 16. Class J-Pe 수익증권 17. Class J-P2e 수익증권</p> <p>② ~ ④ (현행과 동일)</p>
<p>제12조 (수익자명부)</p>	<p>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u>한국예탁결제원에</u> 위탁하여야 한다.</p> <p>② 집합투자업자는 <u>한국예탁결제원</u>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u>한국예탁결제원</u>은 관련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④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u>한국예탁결제원에</u>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u>한국예탁결제원</u>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⑥ 제5항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u>한국예탁결제원</u>은</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u>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u>에 위탁하여야 한다.</p> <p>② 집합투자업자는 <u>전자등록기관</u>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u>전자등록기관</u>은 관련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③ (현행과 동일)</p> <p>④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u>전자등록기관</u>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u>전자등록기관</u>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p>1. ~ 2. (현행과 동일)</p> <p>⑥ 제5항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u>전자등록기관</u>은 그</p>

		<p>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생략)</p>	<p>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현행과 동일)</p>
<p>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p>	<p>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p>	<p>① 집합투자업자는 ---<u>(생략)</u>---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p> <p>1. (생략)</p> <p>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u>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u>은 제외한다. 다만, 상기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해당 자산이 3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하 "채권"이라 한다)</p> <p>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u>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u>(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p> <p>4. ~ 10. (생략)</p> <p>② (생략)</p>	<p>① 집합투자업자는 ---<u>(생략)</u>---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p> <p>1. (현행과 동일)</p> <p>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u>사채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u>은 제외한다. 다만, 상기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해당 자산이 3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하 "채권"이라 한다)</p> <p>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u>사채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u>(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p> <p>4. ~ 10. (현행과 동일)</p> <p>② (현행과 동일)</p>

<p>제17조(운용 및 투자제한)</p>		<p>집합투자업자는 ---(생략)---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생략)</p> <p>2. 이 투자신탁 ---(생략)--- 투자할 수 있다.</p> <p>가. (생략)</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 (생략)---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수익자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u> 또는 <u>한국주택금융공사법</u>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p> <p>---(이하 생략)---</p> <p>다. (생략)</p> <p>3. ~ 9. (생략)</p>	<p>집합투자업자는 ---(생략)---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현행과 동일)</p> <p>2. 이 투자신탁 ---(생략)--- 투자할 수 있다.</p> <p>가. (현행과 동일)</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 (생략)---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수익자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u>채권</u> 또는 <u>한국주택금융공사법</u>에 따른 <u>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u> 또는 <u>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u></p> <p>---(이하 현행과 동일)---</p> <p>다. (현행과 동일)</p> <p>3. ~ 9. (현행과 동일)</p>
<p>제21조 (운용행위 감시의무 등)</p>	<p>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p>	<p>① (생략)</p> <p>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의 따른 요구를 <u>제3영업일</u>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p> <p>③ ~ ⑤ (생략)</p>	<p>① (현행과 동일)</p> <p>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의 따른 요구를 <u>3영업일</u>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p> <p>③ ~ ⑤ (현행과 동일)</p>
<p>제23조 (판매가격)</p>	<p>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p>	<p>① ~ ② (생략)</p> <p>③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5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p>	<p>① ~ ② (현행과 동일)</p> <p>③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5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p>

		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u>제3영업일</u> 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으로 한다.	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u>3영업일</u> 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으로 한다.
제24조 (환매업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① ~ ③ (생략) ④ 본 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u>제4영업일</u> (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u>제4영업일</u>)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⑤ ~ ⑥ (생략)	① ~ ③ (현행과 동일) ④ 본 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u>4영업일</u> (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u>4영업일</u>)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⑤ ~ ⑥ (현행과 동일)
제25조 (환매가격)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u>제2영업일</u> (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u>제3영업일</u>)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한다)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u>2영업일</u> (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u>3영업일</u>)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한다)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28조 (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u>대차대조표상</u> 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u>재무상태표상</u> 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 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 ~ ③ (생략)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 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 ~ ③ (현행과 동일)
제30조 (집합투자기구의 회계 감사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u>대차대조표</u> 2. ~ 3. (생략) ② ~ ④ (생략)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u>재무상태표</u> 2. ~ 3. (현행과 동일) ② ~ ④ (현행과 동일)
제33조(상환금 등의 지급)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① ~ ② (생략)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u>한국예탁결제원</u> 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 ② (현행과 동일)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u>전자등 록기관</u> 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 (보수)	직판클래스 신설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① (생략)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u>대차대조표상</u> 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 4. (생략) ③ 제1항의 --- (생략) --- 금액으로 한다. 1. ~ 14. (생략) 15. ~ 17. <신설>	① (현행과 동일)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u>재무상태표상</u> 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 4. (현행과 동일) ③ 제1항의 --- (생략) --- 금액으로 한다. 1. ~ 14. (현행과 동일) 15. <u>Class J-e 수익증권</u> 가. <u>집합투자업자보수율</u> : 연 1000분의 5.0 나. <u>판매회사보수율</u> : 연 1000분의 1.15 다. <u>신탁업자보수율</u> : 연 1000분의 0.3 라. <u>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u> : 연 1000분의 0.2 16. <u>Class J-Pe 수익증권</u>

			<p>가. <u>집합투자업자보수율</u> : 연 1000분의 5.0</p> <p>나. <u>판매회사보수율</u> : 연 1000분의 0.9</p> <p>다. <u>신탁업자보수율</u> : 연 1000분의 0.3</p> <p>라. <u>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u> : 연 1000분의 0.2</p> <p>17. <u>Class J-P2e 수익증권</u></p> <p>가. <u>집합투자업자보수율</u> : 연 1000분의 5.0</p> <p>나. <u>판매회사보수율</u> : 연 1000분의 0.8</p> <p>다. <u>신탁업자보수율</u> : 연 1000분의 0.3</p> <p>라. <u>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u> : 연 1000분의 0.2</p>
제43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① ~ ③ (생략)</p> <p>④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u>한국예탁결제원</u>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생략)</p>	<p>① ~ ③ (현행과 동일)</p> <p>④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u>전자등록기관</u>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현행과 동일)</p>
제48조 (공시 및 보고서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① ~ ⑥ (생략)</p> <p>⑦ 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u>한국예탁결제원</u>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u>직접 또는 우편 발송</u>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p>	<p>① ~ ⑥ (현행과 동일)</p> <p>⑦ 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u>전자등록기관</u>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u>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u>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p>

		<p>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p> <p>⑧ 신탁업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u>한국예탁결제원</u>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p>	<p>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p> <p>⑧ 신탁업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u>전자등록기관</u>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p>
제50조 (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직판클래스 신설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저축약관”(Class C-P, C-Pe 및 S-P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저축약관”(Class C-P, C-Pe, S-P 및 J-Pe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부칙4>		<신설>	<부칙 4> (시행일) 이 투자신탁은 2022년 0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끝>